

경관지구 건축선 지정 고시

건축법 제46조 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건축법 제46조 제3항에 의거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9일

군 산 시 장

1. 경관지구로 지정된 주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한 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다만, 월명공원 주변 경관지구는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가. 시가지경관지구(중심) : 3미터
 - 나. 특화경관지구 : 2.5미터
 - 다. 시가지경관지구(일반) : 2미터
2. 경관지구에 따로 지정된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 건축물 및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지표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 및 주변 상황 등으로 인하여 경관지구 안의 건축선 지정이 불합리하다는 건축주의 의견에 따른 완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선을 완화할 수 있다.
 - 가. 기존건축물에 수직으로 증축하는 건축물
 - 나. 도로면을 기준으로 대지면의 높이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다. 택지조성 완료 등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건축선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하거나 관련법 규정에 의거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법 규정에 의한다.
5. 경관지구에 따로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은 대지면적에 산입한다.
6. 경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의 경사도는 인도와 수평이 되도록 하고 견고하고 양호한 바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7.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보행로, 조경, 예술장식품, 조명, 벤치 등 미관증진과 시민 휴게공간 조성 등과 관련된 시설은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 물품적치 등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군산시고시 제2014-85호(2014.8.4.) 『미관지구 건축선 지정고시』는 이 고시를 고시한 날부터 폐지한다.